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0076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2. 4.

판 결 선 고 2021. 3.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4. 부터 2020. 1. 12.까지는 연 6%, 2020. 1. 13.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9%,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D과 피고 C이 2019. 10.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8. 접수 제1482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10.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10. 8. 접수 제 1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지 청구원인 제1. 가. 나.항과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별지 청구원인 제2. 항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12. 13. 주식회사 E에게 고,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

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9. 10. 4.경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해당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9. 10. 8. 위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취득가액 40,000,000원 상당인 경남 함안군 F과 G 토지 및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H 차량, I 차량(2008. 6. 20. 등록)만을 각 소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00,000,000원의 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95,000,000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43,850,584원, 또한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772,819,564원, K에 대하여 255,600,000원, E에 대하여 20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 기금, J 주식회사, 원고, K, E에 대하여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회사와 피고 C이 그들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들인 별지 각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D은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금덕희

청구원인

1.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은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함)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보험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증거
2019. 6. 27.	1억원	E	2019. 7. 1. - 2020. 6. 30.	갑1, 2호증
특기사항	구 증권 L 에 의거 발생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함.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E 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 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을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갑2호증 참조)

2. 보험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그런데 그 후 피고 회사가 E 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체로 인하여 보험사고(2019. 11. 초순경)를 야기함으로써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E 이 피고 회사의 외상매출채권 지불능력 상실을 청구사유로 2019.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갑3호증 참조)

나. 이에 원고가 2019. 12. 13. E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피고 C []에 대하여 위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약정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갑4호증 참조), 이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약정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제1목록

1. 울산 남구 , , , ,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 판매및영업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3.9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울산광역시 남구 대 1631㎡

2. 울산광역시 남구 대 1993㎡

3. 울산광역시 남구 대 194㎡

4. 울산광역시 남구 잡종지 42㎡

5. 울산광역시 남구 잡종지 342㎡

대지권 종류 : 1, 2, 3, 4, 5 소유권

대지권 비율 : 42020분의 261

제2목록

1.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1815㎡
2.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6㎡
3.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84㎡
4.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348㎡
5.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686㎡
6.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02㎡
7.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1428㎡
8.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29㎡
9.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32㎡
10.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74㎡
11.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111㎡
12. 경남 함안군 , , , , , , , ,
, ,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2040㎡(작업장)

1층 60㎡(화장실, 탈의실, 콤프실)

부속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사무실

1층 162.81㎡(사무실)

2층 164.7㎡(숙소 및 휴게실)

3층 24.3㎡(계단실, 펌프실)

13. 경남 함안군 도로 117㎡
14. 경남 함안군 도로 222㎡
15. 경남 함안군 도로 18㎡
16. 경남 함안군 도로 127㎡

17. 경남 함안군 도로 4m²
18. 경남 함안군 도로 96m²
19. 경남 함안군 도로 3m²
20. 경남 함안군 도로 4m²
21. 경남 함안군 도로 148m²
22. 경남 함안군 도로 38m² 끝.